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11.

제안자 : 기획재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008	정성호의원	2024. 5. 30.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24. 11. 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 정소위원회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269	최수진의원	2024. 6. 10.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24. 11. 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 정소위원회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284	한병도의원	2024. 6. 11.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24. 11. 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 정소위원회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863	문진석의원	2024. 6. 24.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24. 11. 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 정소위원회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05	안도걸의원	2024. 7. 1.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24. 11. 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 정소위원회 회부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10	차규근의원	2024. 7. 26.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24. 11. 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 정소위원회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207	정성호의원	2024. 8. 26.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24. 11. 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 정소위원회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221	안도걸의원	2024. 8. 27.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24. 11. 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 정소위원회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329	임광현의원	2024. 8. 29.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24. 11. 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 정소위원회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439	정일영의원	2024. 8. 30.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24. 11. 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 정소위원회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236	이원택의원	2024. 9. 24.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24. 11. 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 정소위원회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55	박홍근의원	2024. 11. 1.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25. 4. 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 정소위원회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608	이종배의원	2024. 11. 15.	소위원회 직접회부(2024.11.22.)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433	정부	2024. 12. 12.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25. 4. 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 정소위원회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546	윤준병 의원	2024. 12. 17.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25. 4. 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 정소위원회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645	윤준병 의원	2024. 12. 18.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25. 4. 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 정소위원회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706	이해민 의원	2024. 12. 19.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25. 4. 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 정소위원회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405	김영호 의원	2025. 1. 9.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25. 4. 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 정소위원회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603	정태호 의원	2025. 1. 17.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25. 4. 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 정소위원회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693	이용선 의원	2025. 3. 6.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5. 9.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 정소위원회 회부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918	김태호의원	2025. 6. 18.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5. 9.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 정소위원회 회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5. 9. 16.)에서 위
21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
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25. 9. 25.)에서 경제재
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21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전년
도 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첨부하도록 하며,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여건 변화가 발생
한 경우 수시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매년 3월 31일까지
로 명시함(안 제30조 및 제66조 제4항).

다.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미 실시 내역 및 사유 관련 서류에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안 제34조).

라.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8조제1항 등).

마. 예비비의 사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대한 소명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1조제2항 및 제4항).

바.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그 분석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사.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8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목표”를 “목표 및 그 이행방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을 “변동요인, 관리계획 및 이행실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
· 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 중 “국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로 한다.

제34조제15호 중 “사유”를 “사유로서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사업”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그 밖에”를 “그 밖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해당 연구개발의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물의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은 제외한다.

제38조제6항 중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을

“선정기준, 조사수행기관,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조사방법 및 절차”로 한다.

제38조의3을 삭제한다.

제51조제2항 본문 중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대한 소명 및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이 불가능하였을 것
2. 해당 회계연도 중 시급하게 지출할 필요성이 있을 것
3.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울 것
4. 해당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것

제5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제3절에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세입예산 재추계의 분석

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보고서에는 추계 방법과 그 근거, 세입예산과 재추계 결과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와 원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6조제4항 중 “국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로 한다.

제85조 중 “제38조의2·제38조의3”을 “제38조의2”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정하는 비율”을 “정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한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내역 및 사유를 제34조 각 호에 규정된 첨부서류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부칙 제8조: 2026년 1월 2일

2. 제34조제15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재정운용계

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 및 사유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2026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승인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도분 세입예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세감면한도 초과 내역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4조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실시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사업추진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38조의3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12항 중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7조제4항 본

문, 같은 조 제5항·제6항”으로, “제38조의2,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38조의2”로,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으로, “제88조제1항·제2항”을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1. ----- 목표 <u>표 및 그 이행방안</u>
2. ~ 8. (생략)	2. ~ 8.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 ----- ----- -----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	1. ----- ----- <u>변동요인, 관리계획 및 이행 실적</u> -----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 ----- ----- ----- ----- <u>다만,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여</u>

⑤ ~ ⑪ (생략)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u>국회</u>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14. (생략)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u>사유</u> 16. (생략)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	<u>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u>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 ----- ----- ----- <u>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u> <u>회</u>----- -----.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 ----- ----- -----. 1. ~ 14. (현행과 같음) 15. ----- ----- ----- <u>사유로서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16. (현행과 같음)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 ----- -----
--	---

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단서 신설>

2. (생략)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
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illegible]

1. ----- 사업.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
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해당 연구개
발의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물
의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은
제외한다.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그 밖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

② ~ ⑤ (생략)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의2,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규정된 사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2항 및 제6항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등을 대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선정기준, 조사수행기관,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조사방법 및 절차-----.

<삭 제>

<신 설>

3.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충

<u><신 설></u> ③ (생 략) <u><신 설></u> ④ (생 략) <u><신 설></u>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u>당하기 어려울 것</u> 4. <u>해당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것</u> ③ (현행과 같음) ④ <u>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u>제55조의2(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 예산을 재추계하여야 한다.</u> <u>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세입예산 재추계의 분석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보고서에는 추계 방법과 그 근거, 세입예산과 재추계 결과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와 원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u>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	--

① ~ ③ (생략)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
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 ⑧ (생략)

제85조(준용규정) 제31조제3항 ·
제35조 · 제38조 · 제38조의2 ·
제38조의3 · 제39조 · 제45조 ·
제49조 · 제50조 · 제54조 및 제
55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 기
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
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
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매년 3월 31일까지 국
회-----
-----.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85조(준용규정) -----
-----제38조의2-----

-----.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 ----

정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한
도”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감면
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하는

	<u>경우 그 내역 및 사유를 제34조 각 호에 규정된 첨부서류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	--